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4. 20 선고 2020가단14306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3. 30.

판 결 선 고 2021. 4. 20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5,073,205원과 그 중 3,000,000원에 대하여 2020. 7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8. 6. 1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,073,20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C는 원고에게 5,073,2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재희

별지